

#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Q&A

## 가. 지원대상 및 내용

### 1. 지원대상이 되는 업체 요건은 무엇인가요?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은 공고일(21.4.15.) 현재 국내에서 **운영 중인 실내 민간체육시설업체와 실내체육시설을 연중 운영하는 실내외체육시설업체**입니다. **스포츠체육업종** 확인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참여가 제한**됩니다.

-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기업, 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 ② 실외전용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또는 실내외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장 중 실외 체육시설에 인력을 채용하려는 사업장
- ③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등 근로자를 해당 사업주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 ④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 ⑥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 ⑦ **사업 공고일(21.4.15.) 이후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인 감원\***이 있는 사업장

\*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 등

### 2. 지원금은 얼마이고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이 되는 체육시설업 종사자 **1명당 인건비 1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6월분부터** 지급가능하며,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입니다.

### 3. 종사자는 몇 명까지 지원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존 종사자(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한 사업장에서 최대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인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존 종사자	4명 이하	5~19명	20명 이상
지원 인원	1명	2명	3명

법인 또는 개인이 **여러 사업장(사업장등록 기준)**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4. '재고용'이란 무엇인가요?

- 체육시설업체**에 근무했으나 코로나19로 실직하였거나 무급휴직자였던 사람을 다시 고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시

퇴직		고용	재고용 해당 여부
필라테스장	→	체력단련장	해당
체력단련장	→	태권도장	해당
요식업	→	탁구장	비해당

- 무급휴직지원금을 받고 있지 **않은** 무급휴직자 또는 채용 전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한** 사람만 고용 가능합니다.

#### 5.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데 지원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예시 (고용노동부) 디지털 일자리 사업, 일자리 안정자금  
(기타) 동일 기간 일자리 사업 등

-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등의 **일회성 자금**과 일자리 사업 외의 **두루누리 지원금** 등은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

#### 6. 지원금 사업 중복 참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 일자리 지원 사업 참여 여부는 **고용노동부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됩니다. 다른 일자리 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선정이 된 후에도 취소가 될 수 있으며,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 7. 자부담금이 있나요?

- 자부담금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종사자의 임금(기본급+주휴수당)이 월1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과 연차·연장(휴일)근로수당 등 각종수당, 4대보험(사업주부담분) 등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자부담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시

근무시간	급여	지원금(160만원) 초과분 자부담	기타 자부담
주 30시간 근무	월 136만원(최저임금)	미발생	각종 수당, 4대보험
	월 200만원(사업주-종사자 협의)	40만원	각종 수당, 4대보험
주 40시간 근무	월 182만원(최저임금)	22만원	각종 수당, 4대보험
	월 300만원(사업주-종사자 협의)	140만원	각종 수당, 4대보험

## 8. 실지급액(주휴포함 기본급)이 160만원 이하일 경우 실지급액 기준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 사업주나 종사자의 사정으로 만근하지 못하여 임금의 실지급액(주휴포함 기본급)이 160만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지급액만큼만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예시 '기본급) 130만원 + (기타 수당) 50만원 = (임금 총액) 180만원'의 경우,  
 기본급에 해당하는 금액 130만원만 지원합니다.  
 기타 수당은 사업주의 자부담금이 됩니다.

## 9. 사업 공고일(21.4.15) 이후에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21.4.15) 이후에 종사자가 자발적인 의사로 퇴직(의원면직)하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을 채용한다면 지원이 가능하지만, 퇴직한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10. 사업 공고일(21.4.15.) 이후에 인위적 감원이 있었는데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사업 공고일(21.4.15.) 이후에 종사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종사자를 퇴직시킨 경우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 11. 사업주의 가족을 고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가족을 고용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12. 이미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을 고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이미 무급휴직지원금을 받은 사람이어도 채용 전 무급휴직지원금 수혜를 포기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나. 신청절차 및 방법 · 제출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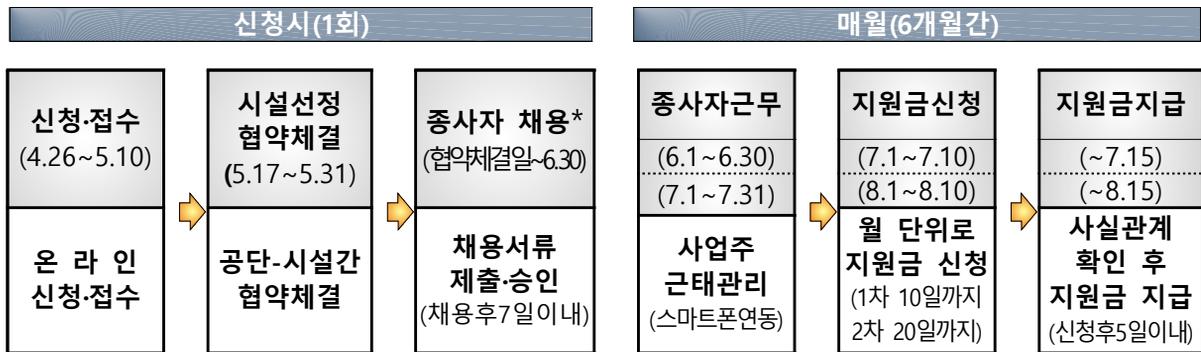
### 1. 사업 참여 신청은 언제 어디서 하나요?

- 사업 참여 신청은 4.26(월) ~ 5.10(월) 17:00이며,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http://kspo.keepfit.co.kr> 에서 PC로만 가능합니다.
- 단, 이메일 및 우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 2.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업 참여 신청 및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내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 절차>



- 지원금은 6월 1일 근무부터 지원되며, 7월부터 지급되기 시작합니다.

**예시 1** 5월 중 종사자 채용\* → 6월 1일 근무부터 지원 → 7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5월 중 근무를 시작하여 5월분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예시 2** 6월 중 종사자 채용\* → 7월 1일 근무부터 지원 → 8월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6월 중 근무를 시작하여 6월분 급여가 발생하게 되면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 종사자가 사업기간의 매월 1일부터 해당 월의 소정근로를 만근하게 되면 다음달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3.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은 무엇인가요?

- ※ 미제출 서류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유효하지 않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 날인 및 서명이 필요한 서류에 날인 및 서명이 없을 경우 미제출로 간주됩니다.

□ 사업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사업자등록증
- ② **(법인사업체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 ③ 실내체육시설 사진(상호를 확인 할 수 있는 실내 사진)
- ④ 전년대비 매출 증감 확인 서류
  - 해당 기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중 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매출세액합계표 등
- ⑤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사회보험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 <서류 발급처>

- ① 사업자등록증  
(온라인) 국세청 홈택스>민원증명>사업자등록증 재발급  
(오프라인) 세무서 및 무인민원발급기
- ② 법인등기부등본  
(온라인) 인터넷등기소>법인등기  
(오프라인) 등기소
- ③ 매출액 확인 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온라인) 홈택스>민원증명>표준재무제표증명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온라인) 홈택스>민원증명>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④ 상시근로자 확인 서류
  - 사회보험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온라인)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사업장 주요서비스>보험료 산출내역 조회>고지년도 검색>산출내역(개인별)  
(오프라인) 건강보험 관할지사 방문 및 팩스 요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온라인) 홈택스>my홈택스>세금신고내역>원천세

## 다. 종사자 채용 · 고용계약 등

### 1. 고용할 수 있는 종사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 고용 가능한 종사자는 트레이너, 코치, 시설운영·관리 등 **체육시설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로 국가·공공기관·협회 등에서 발급한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체육시설업종 종사 경력에 대한 증명(경력증명서 등)이 가능한 자, 해당 종목 전문성에 대한 입증(단증 등)이 가능한 자, 체육·스포츠관련 학과 학위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등입니다.
- 다만, 종사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지원이 제한됩니다.

- ① **단순보조업무**(사무·운영보조원 등) 종사예정자
- ②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참고]**)
- ③ 협회 등 민간체육지도자 **자격이 정지** 중이거나 **취소된 자**
- ④ **사업주(법인의 경우 대표이사)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인 자**
- 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거주·영주·결혼이민자는 가능)

**[참고]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2. 종사자와 어떠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나요?

- 사업주는 종사자와 **상호 협의**하여 ①**임금**은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②**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③**4대보험**은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 월 160만원 초과 **의 기본급과 연차수당, 연장(휴일)근로 수당 등 법정 수당, 퇴직금**은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 3. 사업 참여 중간에 종사자를 다른 사람으로 다시 고용해도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 최초에 고용했던 종사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지원금 종료 3개월 이전까지 1회에 한하여 다른 종사자를 고용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자발적 퇴사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직서 등)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지급 기간은 한 업체에서 최대 6개월까지만 가능합니다.

### 4. 급여 지급 기준인 최저임금의 상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임금 총액은 세전 기준으로, 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연차(휴가)보상수당, 휴일(연장)근로수당 등 법정수당과 퇴직금 등이며, 상세사항은 공고의 지원요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참고

#### [참고1] 최저임금법 제6조

-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算入)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
  2.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참고2]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 제2조(최저임금의 범위) ①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제1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3.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제외한다)에 대한 임금
  4.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 ② 법 제6조제4항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장려가급, 능률수당 또는 근속수당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

## 5. 고용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계약해야 하나요?

- 고용 계약 기간은 대상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장기 고용 계약은 선정 우선순위에 해당되어 선정에 유리하게 작용됩니다.

### <업체 선정 우선순위>

(1순위) 전년대비 매출액 감소율이 높은 시설(사업장) 순으로 선정

※ 전년대비 매출액이 증가한 시설(사업장)은 1순위에서 제외

(2순위) 재고용으로 고용계약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3순위) 신규채용으로 고용계약기간이 긴 순으로 선정

※ 2, 3순위에서 동률일 경우 매출액 증가율이 적은 시설(사업장)을 우선으로 선정

## 6. 종사자 채용은 사업 참여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언제까지 완료해야 하나요?

- 6월 30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 발표 이후 선정된 업체는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이후부터 6월 30일까지 종사자를 채용해야 합니다.